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128호
2. 발 의 자 : 황인구 의원
3. 발의일자 : 2022. 3. 10.
4. 회부일자 : 2022. 3. 16.

II .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환경교육 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유학(도농교육교류협력) 등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 계획에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기금 사용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 「환경교육 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1호).

-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 시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의 생태전환교육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제1항제5호).
-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 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2항).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
 3. 기 타
- 입법예고(2022.3.18. ~ 3.25.)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황인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128호로 발의되어 2022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 시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재원을 활용하는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안 제2조제1호에 대한 검토

- 국회는 지난 2021년 1월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¹⁾
- 동 법률 개정은 법률 명칭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우수학교와 사회 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환경교육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환경교육에 관계된 법률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안 제2조제1호는 개정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2.1.6. 시행)에 맞춰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입법적 조치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1.6., 법률 제17854호, 2021.1.5., 전부개정)

나. 안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대한 검토

- 한편 안 제5조제1항과 제11조제2항은 각각 생태전환교육 계획에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의 생태전환교육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추가하고,

생태전환교육기금 집행 시 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회계로 기금을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문의 개정 추진은 지난 제30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촌유학²⁾ 관련 예산의 집행 방식에 관해 논란이 제기됨에³⁾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농촌유학 사업을 위해 동 기금을 전라남도교육청에 전출하기 위해서는 조례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을 통한 전출 근거 마련을 부대조건으로 동 운용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농촌유학

2) 농촌유학은 관내 공립초등학교와 공립중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6개월(최대 1년) 동안 농산어촌 소재 소규모학교에서 학업 및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유학 지역 교육청에서 각각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3) 제304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3.),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19쪽 참조.

[주요 내용]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가능한 바,
 - 동 조례는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에 동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출계획한 기타특별회계전출금의 경우, 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만일 동 지출계획과 같이 타 시·도로 전출하고자 할 경우, 관련 조례중 타 시·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지원금으로 편성된 5억 원의 예산과목을 ‘기타특별회계전출금’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금번에 제출된 동 개정 조례안과 같이 기금 전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4)

[표] 2022년 농촌유학 지원금 지급계획(안)5)

거주 유형	지원액(월)		학부모 부담액
	서울시교육청	타 교육청	
가족체류형 (가구당 지원)	자녀 1~3인 → 30~50만원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 차등 지급)	30만원	임대료(지원액 초과분) 및 생활비 (관리비, 공과금, 인터넷비 등)
홈스테이형 지역센터형	30만원	30만원	월 20만원 (숙식비, 인건비, 공과금 유학비에 포함)

※ 서울시교육청: (교육급여수급가정) 월 20만원 추가 지급 (초기정착금) 학생 1인당 50만원 1회 지급

○ 따라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에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형태의 사업에 한해 해당 기관 회계로 전출할 수

4)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동 사업을 위해서는 운용계획 상의 과목변경과 동시에 조례상 근거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운용계획 상의 과목변경은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금번 임시회에 동 운용계획의 변경안은 제출되지 않았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회신」(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702(2022.2.7.)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별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중략) … **기준 제2조(적용범위)에 따라 기금의 세입세출예산 과목은 기준 제5조제2항【별표4】*를 따르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운용 지출계획에 편성한 자치단체간부담금(330-07세목)은 이전지출(300그룹)-자치단체등이전(330목)의 세목으로 설정 및 성질별 분류 설명에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위탁)하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세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법령상의 기본 원칙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청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교육청)로 전출하는 사업비를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예산 및 기금에 편성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근거함이 바람직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제2항의【별표11】에서도 308-07목 자치단체간부담금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도록 설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유학 추진 현황」(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2022.3.14.)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은 동 운용계획안 심사 시의 부대의견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 더불어 생태전환교육 계획에 농촌유학에 관한 사항을 명시토록 규정함으로써 기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유학과 생태전환교육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4751, 2022.3.16.).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